

##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시: 2019. 7. 18.(목), 10:00

2. 장소: 본관 1층 대회의실

3. 참석자

구분	인원	성명	비고
참석인원	10	우정원, 이주희, 임원정, 신하윤, 정연화, 유제욱, 이민하, 남상택, 이정화, 장남수	최형석(간사)
불참인원	2	김다연, 송희준	

### 4. 안건

- 제1호의안: 학칙 및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 제2호의안: 2020학년도 대학원 편제 및 학생정원 조정(안) 자문
- 제3호의안: 대학평의원회 구성 관련 변경 요청
- 제4호의안: 대학평의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제51대 중앙운영위원회 요구안

### 5. 개회선언

- 가. 의장은 김다연, 송희준 평의원이 불참하였음을 알리고, 간사는 성원 확인 후 과반이상 출석하여 성원이 충족되었음을 보고하다.
- 나. 의장은 개회를 선언하다.
- 다. 이어 의장은 평의원들에게 배부된 전 회의록 내용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참고하도록 안내하다.

### 6. 안건심의

#### 가. 심의 및 자문사항

- 제1호의안: 학칙 및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 (1) 의장은 제1호의안 학칙 및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의 일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본 안건에 대해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하여 간사는 학칙 및 대학원 학칙 개정안의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2) 의장은 학칙 제50조, 제51조 개정안과 관련하여 회의자료로 배부된 지난 2019.4.17. 대학평의회 회의록을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평의원들에게 의견을 구하다.
- (3) 이민하 평의원은 연계전공 폐지와 관련하여 전공 의견 수렴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이 포함되었는지를 묻고, 사전공지와 사전에 의견을 구하는 것은 다르다고 지적하다. 해당 연계전공 이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절차 및 사전공지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4) 신하윤 평의원은 학칙 제51조 개정안의 주요 골자가 졸업논문 등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학과에서 졸업논문 등의 면제 결정을 하면 대학별로 확정되는 것인지 문의하다.
- (5) 의장은 이번 졸업논문 관련 학칙 개정안이 졸업논문 인정 범위를 포괄화하고 학과(전공)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결정에 따라 이를 선택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임을 설명하다.
- (6) 남상택 평의원은 졸업논문 등의 면제에 대한 건은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할 문제임을 지적하고, 이정화 평의원도 이에 동의하다.
- (7) 이주희 평의원은 학과별로 특성이 다르고, 졸업논문 등을 면제를 하고자 하는 학과는 일부이므로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졸업논문 등을 면제할 수 있다는 개정안에 근거, 총장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결정하면 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다.
- (8) 이민하 평의원은 졸업논문 제도에 대한 학생 의견 수렴 결과 학과별, 학생별로 의견이 다양하였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졸업논문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음을 알리다.
- (9) 장남수 평의원은 학칙 개정안이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등 졸업논문 이외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인지 묻고, 의장은 졸업논문 외에도 논문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 학칙에도 제시되어 있으며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임을 설명하다.
- (10) 이주희 평의원은 일부 대학원에서 졸업논문 대신 학점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음을 말하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학부의 졸업논문 면제를 막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11) 유제욱 평의원은 제51조 1항과 7항이 충돌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의장은 학장 결재 후 총장 결재로 이해하면 될 것으로 설명하다. 이주희 평의원은 시행에 관한 사항을 대학장이 정하는 것이므로 1항과 7항이 충돌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졸업논문 등 면제에 대한 학과의 요청을 총장이 엄격하게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다.
- (12) 남상택 평의원은 졸업논문 면제 규정에 대해 현재는 일부 학과만 면제 의사를 밝혔으나 몇 년 후의 상황이 우려됨을 말하고, 다시 복귀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음을 지적하다.

- (13) 정연화 평의원은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된 배경에 대한 의문을 표하고, 간사는 학부 졸업논문 제도에 대한 교무처의 학과, 학생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안내하다.
- (14) 의장은 졸업논문 등 면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면제를 결정하는 학과가 점차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칙 제51조1항 개정안 내용 중 “다만, ..... 면제할 수 있다”의 문장을 삭제하는 안을 제시하다.
- (15) 이주희 평의원은 학칙 제51조1항 개정안 내용을 “..... 졸업요건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논문제출,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또는 졸업종합시험 ‘등’의 방법에 의한다”로 수정하는 안을 제시하다.
- (16) 정연화, 유제욱 평의원은 ‘등’을 명시하는 것은 면제를 포함할 수는 없고 요건을 나열한 것임을 지적하고, 의장 및 이주희 평의원은 면제는 불가하되 학과 특성에 맞는 유연한 졸업논문 등의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안이 될 수 있다고 답하다.
- (17) 간사는 졸업논문 제도에 대한 교무처의 의견을 듣고자 교무처에서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요청하다.
- (교무처 참석자: 학적부처장)
- (18) 의장은 학적부처장에게 졸업논문 면제를 추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19) 학적부처장은 면제에 대한 논의가 작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학부 및 대학원 졸업논문 제도의 실효성을 재고하여 졸업논문 제도가 학과 특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학과에게 면제의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음을 설명하다.
- (20) 의장은 면제에 대한 내용이 별도의 한 문장으로 제시되어 면제가 강조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면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학과 특성에 맞는 다른 방법으로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요청하다.
- (21) 이주희 평의원은 의장의 의견에 동의하며, 졸업요건의 4가지 방법 뒤에 ‘등’을 붙여 학과의 자율성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개진하다.
- (22) 신하윤 평의원은 개정안을 “..... 졸업요건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논문제출,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또는 졸업종합시험 등 학과 또는 전공의 특성을 고려한 방법에 의한다”로 수정하는 안을 제시하다.
- (23) 정연화 평의원은 졸업요건의 선택지를 확대할 경우 학업성적부 및 성적증명서에 P/F로 기재되는 졸업요건 항목을 모두 코드화하기 어려움을 지적하고, 의장과 이주희 평의원은 졸업요건 항목을 반드시 세부화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표하다.
- (24) 이민하 평의원은 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외에도 단과대학 및 학과별로 인턴십, 세미나 수강 등 다양한 졸업요건 관련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25) 의장은 학칙 개정안에 대해 제51조1항 개정안을 “…… 졸업요건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논문제출,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또는 졸업종합시험 등(이하 ”졸업논문 등“이라 한다)의 방법에 의한다”로 수정, 7항에서 ‘면제’를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심의를 종료 하다.
- (26) 의장은 대학원 학칙은 대학원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2020년 대학원 편제 및 정원 조정사항 반영이 주요 골자임을 설명하다.
- (27) 임원정 평의원은 유아교육학과의 박사 및 통합 과정 수여학위명에 교육학이 추가된 것에 대해 질의하고, 간사는 유아교육학과의 유아교육운영관리 세부전공 졸업 시 신설 학위명(교육학박사)으로 학위가 수여됨을 답하다.
- (28) 이주희 평의원은 학과간 협동과정 신설과 관련하여 교수평의회의 의견조사 결과 참여 학과에서 참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을 지적하며, 융합전공 신설 시 참여 학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아시아여성학 협동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 (29) 의장은 학과 신설에 관한 건은 2020학년도 대학원 편제 및 학생정원 조정(안) 자문 내용을 참고해 줄 것을 요청하며, 교수평의회에서 의견조사 진행 중으로 취합된 의견을 전달할 예정임을 알리다.
- (30) 임원정 평의원은 2020학년도 계열별 정원 조정(안)의 의학계열 조정 인원에 대해 문의하고, 간사는 대학원은 총정원으로 운영되며 계열별 정원은 관리 차원으로 매년 변경될 수 있음을 답하다.
- (31) 남상택 평의원은 유전상담학 협동과정이 자연과학계열로 되어 있으나 참여 학과에 자연 과학계열이 없다는 점에 의문을 표하고, 의장과 간사는 의과학 분야는 의학계열이 아닌 자연과학계열로 분류됨을 설명하다.
- (32) 이주희 평의원은 협동과정의 장점이 있으나 학교 자원이 분산되어 잘 운영되지 않는 경 우가 있음을 지적하다. 간사는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에 따라 협동과정 운영실적을 매 3년마다 평가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33) 의장은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해 평의원들에게 추가 의견이 있는지 묻고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답하여 개정안 심의에 통과한 것으로 확인하고 심의를 종료하다.

#### □ 제2호의안: 2020학년도 대학원 편제 및 학생정원 조정(안) 자문

- (1) 의장은 제2호의안 2020학년도 대학원 편제 및 학생정원 조정(안) 자문의 일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하여 간사는 일반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신설 및 계열별 정원 조정(안), 특수대학원 정원조정, 학과 신설, 전공 신설 및 폐지, 대학원/학과/전공

명칭 변경 내용을 설명하다.

- (2) 신하윤 평의원은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국제일본어교육학과 신설 조건부 승인(3년 후 재평가)과 관련하여 3년 계약의 비정년 교원이 계속해서 배출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다. 이어 간사는 편제조정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 검토된 건으로 비정년교원 중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일본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크고, 교육을 제공함에 있어 학교의 추가적 부담이 없는 상황이므로 시작은 하되 3년 후 수요와 운영상의 문제가 없는지를 재평가하는 조건으로 신설 결정을 내렸음을 설명하다.
- (3) 의장은 학과 신설 시 관련 학과 교원들에게 사전에 내용을 공유하여 소속 학과 운영에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간사는 안내하겠다고 답하다.
- (4) 의장은 2호의안과 관련하여 교수평의원회 의견이 전달될 예정임을 다시 안내하다. 평의원들에게 추가 의견이 있는지 묻고 더 이상 의견이 없어 자문을 종료하다.

#### 나. 논의사항

##### □ 제3호의안: 대학평의원회 구성 관련 변경 요청

- (1) 의장은 제3호의안 대학평의원회 구성 관련 변경 요청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간사는 변경 요청 내용 및 요청 사유, 변경 시 개정이 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설명하다.
- (2) 의장은 동문 평의원 용어 변경 요청과 관련하여 2019.4.17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에 근거 총동창회의 의견 수렴 결과를 질의하다.
- (3) 남상택 평의원은 이화는 동창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고, 총동창회 의견 수렴 결과 동창으로 용어 변경을 요청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답하다.
- (4) 장남수 평의원은 동창회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의견을 개진하다.
- (5) 이민하 평의원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변경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하다. 이어 「대학평의원회 평의원의 추천 및 위촉에 관한 세칙」 공유를 요청하다.
- (6) 의장은 평의원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평의원들이 모두 동의하여 대학평의원회 구성 단위 용어를 동문에서 동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논의를 종료하다.
- (7) 의장은 교수평의원회 자격 변경 요청과 관련하여 평의원들에게 의견을 요청하다.
- (8) 의장은 대학평의원회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수 평의원을 당연직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하고, 교수평의원회의 의견 수렴 결과임을 알리다.
- (9) 유제욱 평의원은 교수평의원회 대표성을 인정함을 밝히고 동의를 표하다. 이어 직원 평의원도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인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안하다.

(10) 의장은 제안 내용은 다음 대학평의회 논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함을 알리고, 정연화 평의원은 직원 노동조합에 의견 수렴 후 발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하다.

(11) 의장은 평의원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평의원들이 모두 동의하여 교수 평의원의 자격을 '교수평의회 의장, 부의장(선출), 교수평의회가 추천한 전임교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논의를 종료하다.

#### □ 제4호의안: 대학평의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제51대 중앙운영위원회 요구안

(1) 의장은 제4호의안 대학평의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제51대 중앙운영위원회 요구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간사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 상정 요청서 내용을 설명하다.

(2)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 요구안과 관련하여 ①학생 평의원 인원 확대에 대한 건은 2018.12.7 회의에서 이미 논의를 진행하였고, ②이번 회의에 참관인 허용은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했으며, ③투명한 회의록 작성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하다.

(3) 이민하 평의원은 ①학생 평의원 인원 확대와 관련하여 학생 평의원 인원만 늘려달라는 제안이 아닌 전체 평의원 인원과 더불어 학생 인원을 늘려달라는 요구임을 설명하다. 이어 2018.12.7 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대학평의원회 인원 조정에 대한 각 구성단위별 의견수렴을 해줄 것을 요청하다. 이어 ②회의록은 등록금 심의위원회 수준의 자세한 회의록을 요구하는 것이며, ③2018.12.7 회의에서 사전에 참관을 신청하여 의장이 승인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평의원들의 의견을 모았으므로 이번 회의 전 참관을 신청한 것임을 설명하다.

(4) 의장은 이번 중앙운영위원회의 요구안은 기 논의된 내용이므로 참관을 불허하였음을 설명하다.

(5) 이민하 평의원은 학교 관계자는 회의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하여 학생들은 참관할 수 없는 이유를 질의하고, 간사는 학교 관계자의 경우 참관 또는 회의 참여의 목적이 아닌 심의 및 논의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해 모시는 것임으로 학생 참관과는 다름을 설명하다.

(6) 이민하 평의원은 3월 학생 총투표를 통해 수렴한 협의체 요구안에 대학평의원회 관련 요구안이 있는 만큼 학생들의 참관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다.

(7) 이주희 평의원은 대학평의원회 구성 인원 확대로 더 다양한 의견이 많아지면 심의,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급격한 변화는 어렵더라도 학생 평의원 인원과 비례하여 대학평의원 총 인원을 조금씩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또한 현재 회의록은 적정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나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며, 전향적 입장에서 합의를 통해 발언은 불허하되 참관은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8) 이민하 평의원은 법에서 정한 구성 인원은 최소한이며, 학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를 해야 하므로 인원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이어 학생 평의원이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학부와 대학원은 접점이 없으므로 별도의 구성단위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설명하다.
- (9) 의장은 전체 평의원과 학생 평의원 인원 확대를 분리하여 논의할 것을 요청하며, 평의원 인원 확대에 대해 다음 회의에서 이에 대한 의견 교환 및 검토하는 것을 제안하다. 이어 본분교 설치 및 분리 여부를 포함한 주요 사립대의 대학평의원회 구성 현황을 회의 자료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다.
- (10) 이민하 평의원은 참관을 허용하는 예외가 무엇인지 질의하고, 다음 회의에서 대학평의원회 학생 평의원 인원 조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므로 학생 참관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다.
- (11) 의장은 이 자리에서 참관 허용에 대해 확답할 수 없음을 밝히며, 대학평의원회 인원 조정에 대해 논의가 아닌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의견 교환으로 진행 예정임을 답하다.

## 7. 폐회선언

의장은 안건 심의 및 자문 종료를 알리고 폐회 선언하다.

2019년 7월 18일

의장 우정원

